의안번호	제 676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358회)

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황규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7년 8월 21일

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황규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76

발의연월일 : 2017년 8월 21일
발 의 자 : 황규철・이의영・김인수・엄재창・임병운・임회무・이양섭 의원(7인)

1. **제안 이유**

○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는데, 그 대상품목은 「상표법」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데 관련 법과 규칙의 조문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

2. **주요 내용**

○ 「상표법」 제10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제4호로, 「상표법」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으로 각각 개정함(안 제3조)

3. **조례안** : 붙 임

4. **관계법령 발췌** : 붙 임

5. **예산조치** : 해당사항 없음

6. **관련부서 협의** : 농정국 원예유통식품과 협의

7. **입법예고사항**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대상품목)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「상표법」 제36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[별표1] 의 상품류 구분에 따라 식용 가능한 품목에 한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~ 제2조(생 략)	제1조 ~ 제2조(현행과 같음)
제3조(대상품목)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「상표법」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〔별표1〕의 상품류 구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.	제3조(대상품목) **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「상표법」 제36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[별표1]의 상품류 구분에 따라 식용 가능한 품목에 한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**

관 계 법 령

□ 상표법

제36조(상표등록출원)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)
2.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[대리인이 특허법인·특허법인(유한)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]
3. 상표
4. 지정상품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(이하 “상품류“라 한다)
5.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항(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6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□ 상표법 시행규칙

제28조(상표등록출원)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”란 별표 1에 따른 상품류를 말한다.